#### 부패영향평가지침

제정 2020. 01. 23. 개정 2021. 08. 24. 개정 2021. 12. 14. 개정 2024. 7. 2.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 제규정관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영향평가(이하"평가"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규정 중의 부패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·검토하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예방과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평가라 함은 제규정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·검토를 실시한 후다음 각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.
  - 1.원안동의 :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
  - 2.개선권고 :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·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·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
  - 3.철회의견 :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
  - 4.참고의견 : 평가대상의 문제점에 대해 이해관계자간의 의사합의가 추가로 필요하거나 개선 권고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개선대안을 마련도록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
- 제3조(평가제외 대상)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규정은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. 1.직제, 권한대행, 직무대리, 당직·비상근무, 급여, 수당, 회의규칙, 청사관리, 증명발급, 제안, 보안, 각종 서식, 공인(인장), 기념일 등 진흥원의 조직운영, 업무분장, 행정관리, 행정지원, 문서관리 등 단순·기술적인 사항의 제규정
  - 2. <삭제 2024. 7. 2.>
  -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실장이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4조(평가기준)평가는 <별표 제1호>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5조(평가절차)①제규정 주관부서장은 <별표 제2호>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첨부하여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예정 7일전까지 감사실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7일전까지 요청하기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를 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②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후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

제2조의 의견으로 세분한 <별표 제3호>의 세부평가서를 첨부하여 7일이내에 제규정 주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의 보완이나 전문가 자문 등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평가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를 제규정 주관부서장에게 통보 하고 신속히 평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14>

제6조(결과처리)①제규정 주관부서장은 세부평가서에 따라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제규정 주관부서장은 세부평가서의 개선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규정관리규정 제7조에 정한 제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제정 및 개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1. 08. 24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1. 12. 14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4. 7. 2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

평가분야	평가항목	주요 검토 내용
	준수부담의 합리성	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, 기업,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·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 적 수준인지 여부
준수	제재규정의 적정성	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 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
	특혜발생 가능성	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,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	재량규정의 구체성·객관성	재량권자, 재량범위, 재량기준,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 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·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, 과도 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 되어 있는지 여부
집행	위탁·대행의 투명성·책임성	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·대행 시 위탁·대행 요건, 범위와 한계,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·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
	재정누수 가능성	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 지,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·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
	접근의 용이성	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, 기업,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 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
행정 절차	공개성	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 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
	예측가능성	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,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
	이해충돌가능성	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
부패 통제	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	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
	소극행정 유발 가능성	제규정상 근거 부재 등이 임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

#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

제규정명			제·개정 예정일		관련 근거
		년	월	일	**법, **기준, 공문 등
붙임	<ol> <li>1. 사전예고제 대상인 경우 제출된 의견, 의견처리 결과</li> <li>2. 관련근거의 해당자료</li> <li>3. 자체 세부평가서</li> </ol>				

소관부서 :

담 당 자 :

제출일: 년월일

### 자체 세부평가서

	사세 세구성사시			
	■ 제규정명 : [평가대상 조문]			
	■ 평가기준			
I	■ 현황			
I	■ 문제점			
	■ 개선방안			
	■ 개선결과 : 신구조문 대비표 (제정시 전문)			
	현 행 개 정 (안)			

#### 세부평가서

	ツープング					
■ 제규정명 :	{평가대상 조문}					
■ 평가기준						
■ 현황						
■ 문제점						
■ 개선방안						
■ 검토결과 :						
현 행	개 정 (안)					